의 안 번 호		제	ই
의	결	2020.	
연 -	월 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문 화 다 양 성 의 보 호 와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문화다양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, 위원장을 국 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 이 개정(법률 제17406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,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, 위원의 제착·기피·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다양성위원회 정부위원을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관계 부처의 범위를 조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(안 제4조제1항)
 - 정부위원: '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무조정실'등 12개 부처에서 '문화체육관광

부, 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법무부, 행정 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'등 10개 부처로 조정

- 민간위원: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

- 나.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4조의3)
- 다.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4조의4)
- 라.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위탁 범위 및 위탁기관 고시 근거 신설(안 제1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"이란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국무총리가"를 "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"로, "7명"을 "10명"으로 한다.

- 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외교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여성 가족부차관
-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무총리는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"으로 한다.

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

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- 제4조의4(위원회의 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·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2조(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개최
 - 2.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
 - 3.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
 - 4.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
 -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

개

제4조(위원회의 위원 등) ① 위원 제4조(위원회의 위원 등) ① 위원 원장"이라 한다)인 국무총리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

- 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외 교부장관, 법무부장관, 행정안 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 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보건 복지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 실장
- 2. 국무총리가 문화다양성 보호 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
- ② ~ ④ (생 략)

제4조의2(위원의 해촉) 국무총리 제4조의2(위원의 해촉) 문화체육

회는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 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" 이란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 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정

아

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외 교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 전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고 용노동부차관, 여성가족부차 곾

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-	
10명	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관광부장관은	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오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
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 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 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4조의4(위원회의 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·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

<신 설>

<신 설>

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다양 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 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 개최
- 2.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
- 3.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다양 성 보호와 증진 교육
- 4.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다양 성 전문인력 양성
-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 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

연 락 처

(044) 203 - 2516